

## 초빙교수임용 규정

**제 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초빙교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조(자격)** ① 초빙교수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(2019.8.1. 개정)

② 초빙교원에 대한 자격기준 중 특수한 교과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각 학과의 교육과정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학과장이 학과회의 등으로 걸쳐 정해진 교과목으로 정한다.

(2019.8.1.개정)

**제 3조(임용기간)** ① 신규 임용되는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

(2019.8.1.개정)

②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임통지 등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

**제 4조(임용절차)** 해당 학과장 및 단체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
**제 5조(임용계약)** ① 초빙교수를 임용할 경우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② 초빙교수 임용계약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
1. 임용기간
2. 보 수
3. 담당강의시간
4. 기타 임용조건

**제 6조(구비서류)** 초빙교수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1. 이력서
2. 학위 및 성적증명서
3. 경력 및 재직증명서
4. 당회장 추천서(본 교단을 원칙으로 한다.)

**제 7조(처우)** ① 총장은 초빙교수에게 필요에 따라 강의 및 연구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초빙교수에게 전항의 강의를 위촉할 경우 본 대학교 시간강사료를 지급하며, 지급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 8조(해임)** 초빙교수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임시킬 수 있다.

**제 9조(운영세칙)** 초빙교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